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23.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24.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4.11.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박덕흠의원)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친족상도례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개정안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면 가정 내부의 일에만까지는 형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의 순기능이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의 지갑에서 소액의 생활비를 훔치거나, 자녀가 학원 수업을 위한 교재비라고 속이고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친구들과 군것질에 쓴 경우까지 수사기관이나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위와 같이 가족이나 친족의 경제적 생활 관계 및 이에 따른 범죄는 금액이나 유형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모든 분쟁에 형사처벌을 전제한 형법이 필수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 또한 가정 내 극히 사소한 사건에까지 모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은 규정 자체에 있기보다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형면제의 법적 효과를 일률적·필요적으로 발생시키는 데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고, 친족간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권력의 개입보다는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친족과 가해친족 쌍방이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

하도록 하는 것이 친족상도례 제도의 연혁과 취지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